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34
----------	------

2026년 3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9일, 이봉준 의원 외 25명
-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2일
- 다. 상정일자: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봉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에 그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였음.
-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 안 제10조).
-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개선 권고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추가(안 제10조제5항).
- 서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¹⁾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개선 권고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위원에 사회적 약자(장애인)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²⁾」를 근거로 구성되었음(‘22년 9월).

동 위원회는 총 40명(당연직 11명, 위촉직 29명)의 위원으로 구성, 3개의 분과 위원회(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기후예산제 운영)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요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탄소중립 관련 행정계획 및 조례 검토 등을 자문해 오고 있음.

-
- 1)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1. 11.>
② ~ ④ (생략)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⑥ ~ ⑨ (생략)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② ~ ④ (생략)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 2)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⑩ (생략)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 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뤄 이견 없음.
- 안 제9조제4항은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집행 부서의 수용성이 중요할 것임.
- 안 제10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후 정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시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9. 기본계획의 시행에 <u>소요되는</u>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p> <p>10. (생략)</p> <p>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u>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u>환경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u>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u>환경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필요한</u> ----- -----</p> <p>10. (현행과 같음)</p> <p>③ ----- ----- <u>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 <u>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p> <p>④ 시의회는 <u>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p>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장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

② -----
-----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1. 2.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⑥ ~ ⑩ (생략)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② (생략)

③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구성 및 운영) ① -----

-----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장애인, 노동자-----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

----- 기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
2. 3. (생략)
- ② ~ ⑤ (생략)

너지환경부장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

-----.

1. 시의 -----

2.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3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이봉준,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성연, 신동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정부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 2025년 11월에 그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개정하였음.
-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개선 권고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추가(안 제10조제5항)

라. 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9. 기본계획의 시행에 <u>소요되는</u>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p> <p>10. (생략)</p> <p>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u>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u>환경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u>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u></p>	<p>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필요한</u> ----- -----</p> <p>10. (현행과 같음)</p> <p>③ ----- ----- --- <u>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u></p>

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④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

-----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에 따른다.

1. 2. (생략)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장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생략)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
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
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
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⑥ ~ ⑩ (생략)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② (생략)

③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
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지정·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1. ~ 3. (현행과 같음)

4. ----- 장애인, 노
동자-----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지정· 운영 등) ① -----

다)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
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
는 국공립연구기관

2.·3. (생략)

② ~ ⑤ (생략)

-----.

1. 시 -----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용어를 수정(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환경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장관)하여 관련 용어를 현행화한 것임
- 또한, 안 제10조제5항제4호에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대상군에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위촉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 증원에 따른 별도의 추가 수당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